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85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이개호·정진욱·민형배

위성곤 · 서삼석 · 천하람

조인철 • 부승찬 • 황명선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제17조제2호 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방문재활 및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륟	륟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	제15조(보건의료)
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	
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	
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
	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
	<u>적·정신적·사회적</u>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u>재활서비스</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	제17조(장기요양)
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	
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	
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
하도특	록 노력하여이	ㅑ 한다.	

- 1. (생략)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에 따른 <u>재가급여 및</u>시설급여
-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방문재활</u>	및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3. (현행과 같음)